

베를린 미테구청

질서, 환경, 자연, 도로 및 녹지 관리부

도로 및 녹지 관리청

베를린 미테구청, Bezirksamt Mitte von Berlin, 13341 Berlin

송달 증명서 수신인:

코리아협의회

대표 - 한 나탈리 정화

법률대리인 - dka(데카아) 법률 사무소

변호사 - 파울 호트나이어

Immanuelkirchstraße 3-4

10405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특별 사용 연장 신청

존경하는 한정화 씨께,

2024년 8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하신 평화의소녀상 특별 사용 무기한 연장 및 베를린 미테구청으로의 영구 대여 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 및 추가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 8월 21일 제출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2. 귀하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베를린 미테구의 브레머 길과 비르켄 길 사이에 있는 평화의소녀상을 공공 도로에서 잔여물 없이 완전히 철거할 것을 요청합니다.
3. 위 1번과 2번은 즉각 집행되어야 합니다.
4. 귀하가 2번의 요구를 명시된 기간 내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0유로의 벌금으로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5. 이 통지서는 수수료 부과 의무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331.84유로로 책정됩니다.

사유:

I.

“평화의소녀상”은 2020년 2월 19일 공공장소에 임시 예술작품으로 설치 신청되었으며, 2020년 8월 14일부터 2021년 8월 14일까지 브레머 길과 비르켄 길 사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2020년 7월 6일에 허가되었습니다. 이 허가는 2021년 4월 8일, 해당 장소의 공사로 인해 2020년 9월 28일로 설치가 연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설치 기간도 2021년 9월 28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평화의소녀상 설치 이후 심각한 외교적 개입이 다방면에서 이어져, 설치 허가가 철회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법적 보호절차라는 범주에 따라, 즉시 시행 가능했던 설치허가에 대한 철회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지적에 따라, 일시적인 법적보호절차로서 법정 외 합의를 하여, 설치허가철회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4일, 귀하의 의뢰인은 설치 허가를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베를린 미테구 의회(BVV)의 강한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2021년 9월 24일자 결정에 따라 2021년 9월 29일부터 2022년 9월 28일까지로 허가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귀하의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갱신된 평화의소녀상 설치 허가를 2022년 9월 28일부터 추가 2년 연장하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소녀상을 영구 대여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베를린 미테구청의 관행에 따르면, 도시 내에 일시적으로 설치된 예술 작품의 전시 기간은 최대 2년이므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소녀상의 보편성을 위해, 독일의 전쟁 범죄까지도 눈에 띄게 다루는 방향으로 비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간 연장에 대한) 우려 사항을 극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장소의 예술 작품을 영구적으로 대여하는 방안도 귀하의 의뢰인과 논의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우려로 인해 더 이상의 추가 허가는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대신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허가 부여되지 않은 채로 세워진 평화의소녀상을 임시 관용한다는 내용을 관할 부서장이 이메일로 통보했습니다.

담당자 중 한 명이 심각한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비문 문구 변경에 대한 귀하의 의뢰인과의 논의가 오래도록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봄, 비문 문구 변경에 대한 합의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귀하의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예술가들의 문구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을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청 측은 이와 관련하여, 베를린 주정부와 특히 미테구청이 공공장소의 예술 작품 영구 대여를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베를린 주정부가 이러한 예술품 손상 시의 위험이나 교통 안전 의무 등 법적 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안의 외교적 측면으로 인해 베를린 상원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원은 평화의소녀상 추가 설치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으며,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국 간의 합의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는 독일 연방정부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공화국과 일본 간의 추가적인 외교적 갈등과 협력 약화의 위험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귀하의 의뢰인과 구청장, 법무국장과의 추가 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민간 사유지이지만 공공에 개방된 대체 부지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미테구청은 지난 2년간 이러한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귀하의 의뢰인 측에서는 이 대체 장소들이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너무 멀다는 이유로 제안된 장소들을 거부해왔습니다.

2024년 8월 21일, 귀하의 의뢰인으로부터 새로운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2024년 5월 10일자 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평화의소녀상 특별 사용 허가 기간 연장 또는 2024년 9월 28일부터 영구 설치'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귀하의 의뢰인의 기존 대리인이 법무국 사무실에서 기존 행정 절차에 대한 열람을 진행했습니다. 그 직후, 미테구청에 귀하의 의뢰인으로부터 귀하의 법무법인에 대한 새 위임 통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귀하의 의뢰인은 평화의소녀상을 현재 위치에 유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시위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구의회는 구청에 연장을 허용할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구의회는 해당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2024년 9월 24일, 대체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구청과 귀하의 의뢰인 간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미테구 내의 세 곳의 구체적인 대체 부지를 제시했음에도, 귀하의 의뢰인은 여전히 평화의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공공 접근 가능한 합리적인 사유지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전직 시의원이자 현 구청장인 렘링어 씨는 지난 몇 년간 베를린 주와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 총리, 문화 및 언론 담당 연방정부 위임관을 상대로 전쟁 중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경고하기 위한 기림비를 베를린 미테구에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25년까지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 및 미테구가 함께 이 주제를 다룰 기림비 건립을 위한 공모전의 기본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II.

1항에 대하여:

2022년 5월 10일에 제출된 신청서의 요청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신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화의소녀상을 기존 위치에 영구적으로 존치하며 기존 신청서와의 연속성을 요청하는 귀하의 의뢰인의 2024년 8월 21일자 새로운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2024년 9월 28일 이후의 추가적인 예외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합니다:

귀하의 의뢰인은 도로교통법(StVO) 제46조 및 제32조, 그리고 베를린 도로법(BerlStrG) 제13조 및 제11조 2항에 따라, 특별 사용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1항 1문 8호 및 제32조에 따라, 도로교통 당국은 특정 개별 사례에서 도로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예외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 도로법(BerlStrG) 제13조에 명시된 권한 집중에 따라, 도로교통법 상 이미 예외 허가가 필요한 도로 사용의 경우 별도의 특별 도로 사용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법에 따른 관련 사항들은 법제자의 의도에 따라 도로법상 결정 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본 사안의 경우 심사 범위는 베를린 도로법 제11조 2항에 따른 도로 사용 허가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포함됩니다. (베를린 행정법원, 2016년 11월 3일 판결 - 1 K 206.14 -, Rn. 14, juris).

베를린 도로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특별 사용 허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베를린 도로법 제11조 2항에 따라 재량권('원칙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이 이미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베를린 미테구청이 도시 공간 내 임시 예술에 대한 허가를 부여할 때, 최대 1년 동안만 허가를 내주고, 한 번에 한하여 추가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구청은 공공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문화 진흥 국가의 '예술 보장 권리' - 독일 연방공화국을 구성하는 기본법 제5조 3항에서 파생 - 및 평등 원칙에 따라 모든 예술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예술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의 자유는 국가의 예술 지원 의무와 다른 예술가들의 예술의 자유를 위해 실질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한됩니다.

한 예술 작품이 별도 심사 없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면, (해당 예술가는) 우연히 자신의 예술 작품을 위해 장소를 찾은 다른 예술가들에 비해 부당 이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미테구청의 일반적인 행정 관행과 법적 이해에 따라, 영구 기념비 및 추모비는 의무적 의사 표현 절차를 위해 구체적인 디자인으로서 필수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 특별 사용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의 지방 자치권과 도시 계획 권한도 헌법상 제약을 받으며, 이는 베를린 도로법 제11조 2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도시 계획과 관련된 이익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혹은

도시 전체의 경우 베를린 주는 헌법적 결정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 2011년 12월 8일 판결 - OVG 1 B 66.10 -, Rn. 17, juris).

따라서 미테구청의 관행을 통한 이러한 헌법상 제약에 의해 예술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공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각 특별 사용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술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많은 장소들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사용 기간에 따라 공익적 고려 사항이 달라진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도시 계획이나 기념물 보호와 같은 단기 특별 사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요성이 덜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간 지속되는 장기적인 특별 사용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행정 당국은 예술 보장의 권리에 따라 임시 예술 작품을 위해 공공 장소를 제공해야 하지만, 허가 승인 전 각종 고려 사항을 신중히 비교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독일 기본법 제5조 3항 2문에 명시된 검열 금지 원칙에 따르면, 일단 허가가 부여되면 허가 기간 동안 해당 예술 작품은 헌법상 보호를 받으며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납니다.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허가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임의성 금지 원칙 (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라 고려사항을 평가하고 적절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초기 설치 시에는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취소 결정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의뢰인에게 영구 허가에 대한 권리가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 허가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9월 28일부터 2022년 9월 28일까지의 추가 임시 허가 또한 기존 허가 관행에 따라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허가는 미테구청이 공공장소 예술에 대해 적용해 온 이전 허가 관행과 일치합니다.

특히 공공 공간에 임시 예술 작품 설치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종료선을 긋는 허가 관행 때문에, 두 해 더 연장하는 신청에 대해 “검토 없이” 허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를 명확히 제기하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관용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결정 과정에서 독일 연방공화국의 외교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베를린 상원의 총리실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 베를린 시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 언급했듯이, 추가 설치에 연방정부와 베를린주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됩니다.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 연방공화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 문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의 의뢰인과 대화가 진행되었으며, 소녀상 비문의 문구를 변경하여 보다 보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해결책”은 소녀상이 이미 최대 설치 기간에 도달했으며, 소녀상이 미테구청의 공공 예술 설치 허가 관행을 변경하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미테구청의 공공 예술 위원회와 예술, 문화, 역사, 도로 및 녹지부와도 논의되었으며, 이들은 기존 관행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귀하의 의뢰인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지 대중들을 달래기 위해 민간 부지에서 가능한 대체 장소를 찾는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귀하의 의뢰인은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당시 외교적 우려가 비공식적으로 전달되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우려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익은 매번 개별 사례에 맞게 재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도시 계획 및 기념물 보호와 같은 공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설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제 협력과 같은 중요한 외교적 이익이 더 중대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녀상은 두 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소녀상이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기 권리의 주장이라는 주제는 일반화할 수 있지만, 이를 베를린 미테구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소녀상이 작은 일본군'위안부' 박물관으로도 겸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사실은 소녀상의 효과나 체험 가능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및/또는 유럽의 모든 범죄에 대한 언급과 함께, 관련된 전시 성폭력에 관한 영구 기념비를 설치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창의적 영감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평화의소녀상은 이에 좋은 자극을 제공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현 위치에 영구 유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당초의 아이디어는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한정된 기간 동안만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영구적인 전시에 대한 신뢰 보호는 어느 시점에서도 구청에 의해 제공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 해 동안 이 소녀상이 중기적으로도, 더군다나 영구적으로도 남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평화의소녀상을 위해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대중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영구적인 설치가 정치적 방식으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치 국가에서 "정치"에는 법과 규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행정 관행(즉, 행정의 자기 구속성)에 의해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상호작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장소에서의 예술 작품의 장기적인 특별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이 "구청의 예술 지원"은 그 성격상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며, 이는 구청 홈페이지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특별 사용이 고려될 경우, 이는 다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예술가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해당 장소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제의 복잡성에 따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설치 장소가 단순히 독일 내 임의의 장소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테구는 베를린 연방 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상황이 대중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점은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 결과 또한 귀하의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추가적으로 명확히 해야 할 점은, 공공 장소에 있는 예술품을 영구 임대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베를린 주의 이익에도, 특히 미테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베를린 주가 이에 대해 소녀상의 무결성 등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공공장소에서 보장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베를린이 교통 안전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 베를린 주나 미테구청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이 사례처럼 한

번 일어난다면, 이는 독일 기본법 제3조 1항의 평등 원칙에 따라 다른 모든 유사한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및 재정적 위험을 미테구청이나 베를린 주에 전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베를린은 과거에도 다른 프로젝트들의 비슷한 신청을 적법하게 거절했습니다. 영구 대여 제안은 이미 2024년 7월 22일 이전에 위임된 변호사 인켄 스텐에게 이메일을 통해 거부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임시 설치 허가만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소녀상의 영구 설치를 원한다면, 공모 절차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하의 의뢰인이 이제 영구적으로 그 예술 작품을 해당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가 될 것입니다. 이는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1년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며, 영구 설치를 위한 어떤 형태의 공모도 지금까지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의회도 부분적으로 인지한 바이며, 일부는 적절한 공모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 사용에 관한 개별 사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고, 법과 규정으로 정해진 한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뢰인은 이러한 '결정'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해당 결정들은 미테구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요청에 불과합니다.

만약 다르게 봐서, 의뢰인의 예술 작품의 영구적인 특별 사용을 허가할 경우, 독일 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라 유사한 사례에서도 다른 예술 작품에 대한 특별 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이는 특히 중심지에 위치한 미테구에서 공공장소의 제한된 공공 공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상충되는 측면들 때문에 귀하의 의뢰인은 신청된 위치에 평화의소녀상을 영구적으로 특별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안에서 귀하의 의뢰인의 사적 이익보다 공익적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적으로 보호된 지방 자치 단체의 계획 권한이 개인에 의해 과도하게 제한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요구가 공공 공간의 구성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술의 자유는 헌법에 내재된 한계에 의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신청 거부는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적법합니다.

향후 영구적인 기념물을 위한 공모 절차가 있을 예정이며, 그 절차의 범위에 부합하는 한, 의뢰인은 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절차에 있어 어떠한 기준을 제시할 권리가 없으며, 공공장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여전히 명확하게 공공 기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2항에 대하여:

철거 명령의 법적 근거는 베를린 도로법(BerlStrG) 제14조 1항 1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도로 건설 당국은 공공 도로가 적법한 허가 없이 사용되거나, 금지된 물건이 부당하게 배치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 도로에서 불법적으로 설치된 설치물의 제거 또는 사용 중단 및 조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 도로법 제14조 1항에 위법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적용할 때, 특별사용이 허가 없이, 즉 형식상 불법적으로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상관관계의 관점에서 보아도 명백히 허가받을 수 없는 사안이므로 중대한 불법입니다. (베를린 행정법원, 2012년 1월 27일 결정 - 1L 419.11 -, juris Rn. 17)

위에서 언급한 요건이 충족됩니다. 신청된 평화의소녀상 설치를 위한 예외적 허가는 거부되었고, 관용 조치는 최종 결정까지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항에서 언급된 사유들에 따라 이는 공공 도로에 무허가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특별사용허가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이유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예술 지원의 권리와 공공 장소에서 예술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평등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거부 결정과 관련된 철저한 검토를 고려할 때, 소녀상으로 인한 중대한 불법적 특별사용 내지는 독일의 기본법 제5조 3항에 따른 예술의 자유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특별사용허가를 요구할 권리는 배제됩니다. 따라서 명시된 기한인 2024년 10월 31일까지 공공도로에서 철거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상관관계 상 적합합니다.

이 기한은 또한 적절하며,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평화의소녀상을 공공 도로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귀하의 의뢰인이 이미 마지막 허가를 받을 시 명확히 했던 사항이며, 미테구청이 허가 만료 이후에도 철거를 보류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3항에 대하여:

제계는 행정소송법(VwGO) 제80조 2항 4호에 따라 즉시 집행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제1항의 즉시 집행 명령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집행 정지 효력으로 인해 관용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특별 사용 연장” 신청이 최종적으로 거부된 경우, 원래의 평화의소녀상 철거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거부 결정은 즉시 집행 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장기간의 관용기간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관련성에 부합하는데, 모두에게 명확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의 설치물에서도 예상될 수 있는 기한만료 후의 이의제기 및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부정적인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관용의 목적은 단지 규범 내 조건을 평가하고 다른 합의나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하의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특정 장소에만 고집했기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이 점에서 즉시 집행 명령이 의뢰인의 사사로운 관심보다 공공의 이익에서 우위에 있으며, 1항에서 언급한 사유로써 소녀상의 철거는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음에도 관용적 상태를 유지하려는 의뢰인의 요구도 공공의 이익에 우선되지 않습니다.

제2항의 즉시 집행 명령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철거 명령이 이의 및 소송 절차에 따라 집행 정지 효과 (집행이 이의 제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로 인해 집행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이익, 즉 예술의 자유에 따른 헌법적 예술 보장 권리와 모든 예술가들에 대한 평등 대우를 고려한 공공장소 예술의 시간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유효한 허가 없이 특정 장소를 유지하려는 의뢰인의 사적 이익보다 큽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단 특별 사용은 부정적인 선례를 피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해결책을 검토한 후 오랜 기간 관용 상태를 유지한 이 사건에서 철거 명령의 즉시 집행 명령은 적합합니다. 의뢰인은 어떤 유형의 믿을 만한 사례도 근거로 들 수 없을텐데, 이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철거는 처음부터 예상되어 왔으며, 이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공공 도로에서의 철거는 특별 사용 허가가 만료되었을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후속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따른 법적 결과를 고려할 때, 법적 조치를 집행하는 것이, 소녀상의 현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논란을 일으킨 의뢰인의 사적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4항에 대하여:

강제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는 베를린 도로법 제14조 1항 및 행정 집행법(VwVG) 제8, 9, 10, 11, 13조와 2016년 4월 21일 제정된 베를린 행정 절차법(VwVfG BE 2016) 제5조에 있습니다 (GVBl. 2016 s. 218).

제2항에서의 명령은 정당한 조치로 간주되기는 하나, 이행을 강제로 수행하기 위해 대체수용장소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실행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철거비용이 높은 데다 소녀상의 보관 비용까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녀상 철거 비용에 더해 보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녀상의 철거를 의뢰인에게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금 부과가 적절하고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3,000유로의 금액은 적절하며, 이는 외부 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대략 일치하여 소녀상을 공공 도로에서 확실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강제금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다른 금액으로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강제 수단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항에 대하여:

이 결정통지를 위해 도로교통조치에 대한 수수료 규정 (GebOSt) 제399조에 따라 330.84유로의 행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330.84유로를 이 통지서 수령 후 4주 이내, 늦어도 2024년 11월 1일까지 첫 페이지에 명시된 계좌로, 회계번호 2431001321291를 입금명목으로 명시하여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불은 회계번호와 사건번호를 정확히 명시하여 기한 내에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회계번호가 없거나 집계된 금액은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수수료가 제때 납부되지 않을 경우, 최소 5.00유로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50.00유로 이상의 미납된 금액에 대해, 연체된 금액에 매월 1%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불복 절차 안내:

이 처분의 통지 후 한 달 이내에 본 처분에 대해 베를린 미테구청 도로 및 녹지 관리청 (주소: Karl-Marx-Allee 31, 10178 Berlin)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인사와 함께

대리인

(서명)

웬바움스펠트

법적 근거 출처:

GG: 1949년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BGBI. S. 1), 최종수정 2022년 12월 19일 개정법 제1조 (Art. 82)에 의거 (BGBI. I.S.2478).

원본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Hu3>

BerlStrG (베를린 도로법): 1953년 4월 27일 행정집행법 (BGBl. I S. 157), 최종수정 2021년 8월 10일 법률 제5조에 의거 (BGBl. I S. 3436).

VwVG: 1953년 4월 27일의 행정 집행법(BGBl. I p. 157), 2021년 8월 10일의 법 제5조로 최종 수정됨 (BGBl. I p. 3436).

VwGO: 1991년 3월 19일 행정소송법 (BGBl I S. 686), 최종수정 2023년 12월 22일 법률 제1조에 의거 (BGBl. 2023 | Nr. 409).